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부실한 수익성 분석을 기초로 신규 투자사업 추진

소 관 기 관 인천국제공항공사

조 치 기 관 인천국제공항공사

내 용

인천공항공사는 공공기관운영법 제40조 제3항 등에 따라 KDI에 예비타당성 조사¹⁾를 의뢰하거나 「예산관리지침」(인천공항공사 규정) 제35조 등에 따라 자체 예비타당성조사²⁾를 실시하여 신규 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하 “경제성”이라 한다)³⁾ 및 재무성⁴⁾ 평가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기업 등 예산지침 “Ⅱ. 3. 사업비”에 따르면 신규 투자사업, 자본출자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관리지침」 제 35조 및 「총사업비 관리지침」(인천공항공사 규정) 제9조 등에 따르면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KDI의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인천공항공사의 자체 예비 타당성조사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⁵⁾(기재부 훈령, 이

1) 총사업비 2,000억 원 이상 등 사업의 경우 KDI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함(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제25조의3)
2) KDI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외에 총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자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함
3) 해당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함[비용·편익 비율(B/C)로 평가]
4) 수익성을 평가하는 방법 중 하나로 투자비 대비 운영수입의 현금흐름을 분석함(PI를 산정)
5)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1조에서 자체 예비타당성조사 등에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준용하도록 규정함

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이라 한다) 제4조 등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공공기관이 기존에 보유한 토지(이하 “기보유 토지”라 한다) 등 자원도 그 가액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⁶⁾(2013년 3월 KDI, 이하 “일반지침”이라 한다) 등에 따르면 재무성 분석 시 기존의 설비 및 토지·건물에 대한 기회비용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고, 공항부문 사업비용은 용지보상비, 공사비, 예비비⁷⁾ 및 운영비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인천공항공사는 2016년 이후 “인천공항 IBC-Ⅱ 복합리조트 기반시설 조성사업”(이하 “IBC 기반시설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비롯하여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 5건⁸⁾을 추진하면서 [표 79] 및 [별표 23]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경제성·재무성 분석 시 총사업비 산정 현황”과 같이 기보유 토지의 가액 등을 포함하지 않은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KDI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거나 자체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⁹⁾하고 있었다.

6)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지침 제18조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조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부 분석 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고, 동 지침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도록 규정함

7)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비의 산출 오차 및 이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영함

8) 인천공항공사는 해당 사업에 대해 [별표 22]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KDI) 실시 현황”과 같이 KDI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함

9) ‘오성공원사업’의 경우 KDI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타당성이 없는 것(B/C 0.24, PI 0.14, AHP 0.228)으로 평가되었는데도 인천공항공사는 기보유 토지의 가액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회피하여 사업을 추진한 데 대해 2020. 7. 22. 감사원에서 인천공항공사에 주의요구하였음

[표 79]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의 경제성·재무성 분석 시 관련 비용 누락 현황

연번	사업명	분석항목	비용 누락 항목	비고	
1	오성공원사업	경제성	보상비, 예비비	KDI 의뢰	
		재무성	보상비, 예비비		
2	인천국제공항건설 4단계 사업	경제성	보상비, 예비비		
		재무성	보상비, 예비비		
3	인천공항 IBC-II 복합리조트 기반시설 조성사업(1단계)	경제성	보상비		
		재무성	보상비, 예비비		
4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주차타워 및 업무시설 신축사업	경제성	보상비		
		재무성	시설부대경비		
5	이스라엘 [태타] 여객기→화물기 개조시설 개발사업	재무성	보상비, 예비비		자체 예비타당성조사

자료: 인천공항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특히 IBC 기반시설 조성사업 및 “이스라엘 [태타] 여객기→화물기 개조시설 개발사업”(이하 “화물기 개조시설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경우 인천공항공사는 기 보유 토지의 가액 등을 포함하지 않고 자체 산정한 총사업비, 재무성 등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임대료율 등 사업내용을 설계하여 추진하고 있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IBC 기반시설 조성사업의 경우

IBC 기반시설 조성사업(총사업비: 2,074억 원¹⁰⁾, 공사기간: 2020년 1월~2023년 5월)은 국제업무지역 내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도로·공원 등)을 설치하고 부지를 개발사업자에게 임대하는 사업(임대기간 50년 + 49년)으로 2022년 12월 현재 1단계 사업(대상지 총 436만 m² 중 179만 m²)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인천공항공사는 2015년 10월 위 사업의 적정 임대료율, 수익률 등을

10) 공사비(설계·감리비 포함) 1,289억 원, 토지매입비 785억 원

평가하기 위해 “AirCity 투자유치 활성화 전략 수립 용역”¹¹⁾(이하 “투자전략용역”이라 한다)을 실시하면서 사업대상지가 기보유 토지라는 이유로 해당 토지가액을 사업비에서 누락하는 등으로 총 1조 4,558억 원(용지보상비 약 1.3조 원, 운영비 1,558억 원 등)을 사업비에 포함하지 않은 채 재무성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실시한 투자전략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인천공항공사는 [표 80]의 임대요율을 기준으로 산정된 수익률(8.85%)이 당시 내부 기준수익률¹²⁾(5.64%)보다 높아 수익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고, 2016. 8. 1. 주식회사 **복합리조트**¹³⁾와 [표 80]과 같이 투자전략용역에서 가정한 임대료율을 대부분 반영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임대조건을 최종 결정하였다.

[표 80] 투자전략용역 시 가정한 임대료율과 실시협약 시 반영한 임대료율 비교

투자전략용역 시 가정한 임대료율 ^{주)}	실시협약 시 반영한 임대료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화기간(5년): 공시지가 1% ▪ 안정화기간 이후: ‘공시지가 5%’와 ‘영업이익률을 고려한 임대료’ 중 높은 금액 * 2단계(2023년 개장 계획) 부분은 공시지가 5%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화기간(5년): 공시지가 1% ▪ 안정화기간 이후 3년: 공시지가 5% ▪ 잔여기간: ‘공시지가 5%’와 ‘영업이익률을 고려한 임대료’ 중 높은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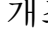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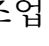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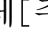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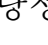
주: 투자전략용역 시 가정한 임대료는 ‘복합리조트’ 시설에 대한 임대료임
 자료: 인천공항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그러나 실시협약 체결 이후인 2017. 9. 22. KDI에서 기보유 토지의 가액 등을 포함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¹⁴⁾한 결과, 인천공항공사의 당초 분석과 달리 위 사업이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PI 0.29)으로 나타났다.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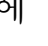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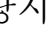
(나) 화물기 개조시설 개발사업의 경우

화물기 개조시설 개발사업[총사업비: 1,490억 원¹⁶⁾, 공사기간(예정): 2023년 6

11) 투자전략용역은 당시 사업대상지 전체 면적(3,274,000㎡)에 대해 사업 시행을 전제로 수익률을 분석함
 12) 보유자산을 활용하여 벌어들여야 하는 수익률(WACC)로 사업의 수익률이 기준수익률보다 높으면 재무성이 확보됨
 13)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을 위해 **복합리조트**(미국 카지노복합리조트 개발·운영 회사)가 설립한 SPC임
 14) 당시 1단계 사업에 해당하는 1,168,803㎡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함
 15) KDI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 추진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음(AHP 0.545)
 16) 공사비 1,364억 원, 시설부대경비 126억 원

월~2025년 5월]은 화물기 개조(Passenger To Freighter Conversion, P2F) 시설 건설 후 개조업체[주식회사 ,  (이스라엘 업체)와 주식회사  (국내업체)가 2023. 4. 12. 설립한 합작법인]에 임대하는 사업(기간 50년)으로 2022년 12월 자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023. 4. 17. 주식회사 와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등 진행 중에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위 사업에 대해 2021. 12. 15. 기보유 토지의 가액 및 예비비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 2022. 8. 4. KDI로부터 위 사업의 경제성(B/C 0.28) 및 재무성(PI 0.25)이 부족하다는 내용을 담은 중간 보고를 통보받았다.

이에 당시 인천공항공사  처(처장 BF,  팀장 BG)는 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지속하여 '사업 미시행'으로 최종 통보받을 경우 향후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2022. 8. 24. 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철회¹⁷⁾하고, 자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재무성 등을 분석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위 사람들은 2022년 11월 자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면서 KDI의 분석과 달리 기보유 토지의 가액(49,953백만 원), 예비비(19,894백만 원)를 누락한 채 재무성을 평가하였고, 그 결과 수익성이 확보(PI 1.051, NPV 76억 원)된 것으로 나오자 자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가정한 임대료율 등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 중¹⁸⁾에 있다.

그러나 자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누락된 기보유 토지의 가액 등을 포함하여

17) KDI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중간분석 결과)에 따르면 화물기 개조시설 개발사업 총사업비는 2,118억 원으로 산정되어 있어 KDI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해당되는데도 인천공항공사는 철회 이후 KDI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의뢰하지 않음(참고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규모는 당초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 등'이었다가 2022. 12. 20.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제25조의 3 제1항 제1호가 개정되어 2023. 1. 1.부터 '총사업비 2,000억 원 이상 등'으로 변경된 바 있음)

18) 자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가정한 시설임대료 및 부지임대료가 그대로 실시협약에 반영되었음

재무성 평가를 다시 실시한 결과, [표 81]과 같이 PI가 0.759(NPV △501억 원) 수준으로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1] 화물기 개조시설 개발사업의 재무성 재검토 결과

자체 예비타당성조사	재검토
PI 1.051, NPV 76억 원, IRR 4.82% (기보유 토지가액, 예비비 미반영)	PI 0.759, NPV △501억 원, IRR 3.22% (기보유 토지가액 49,953백만 원, 예비비 19,894백만 원 반영)

자료: 인천공항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인천공항공사는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현행 자체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다만, 실제 현금지출이 발생되지 않는 비용을 분석요인에 포함할 경우 사실상 해당 비용을 민간사업자에게 전가시키게 되어 항공산업에 대한 글로벌 투자 유치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등 관련 지침에서 기보유한 토지의 가액 등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점, 공공기관인 인천공항공사가 민간사업자의 투자유치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일정한 지원을 하더라도 정확한 수익성 분석 등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익 규모 등을 파악하여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천공항공사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 ① 앞으로 자체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 재무성을 분석하는 경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유한 토지의 가액 등을 누락하여 사업비를 산정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 ② 관련자(BG, BF)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22]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KDI) 실시 현황

(단위: 억 원)

연번	사업명	총사업비 ¹⁾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일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²⁾			비고
					B/C	PI	AHP	
1	오성공원사업	870	2016. 9. 23.	2016. 10. 17.~ 2017. 10. 18.	0.24	0.14	0.228	사업 미추진 (AHP<0.5)
2	인천국제공항건설 4단계 사업	41,852	2016. 9. 23.	2016. 10. 17.~ 2017. 6. 27.	1.46 1.82 2.12	0.17 0.19 0.22	0.590 0.610 0.620	사업추진 (AHP≥0.5)
3	인천공항 IBC-II 복합리조트 기반시설 조성사업(1단계)	2,390	2016. 9. 23.	2016. 10. 17.~ 2017. 9. 22.	1.16	0.29	0.545	사업추진 (AHP≥0.5)
4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주차타워 및 업무시설 신축사업	3,483	2019. 4. 19.	2019. 4. 29.~ 2020. 2. 26.	0.98	1.50	0.646	사업추진 (AHP≥0.5)
5	이스라엘 [태타] 여객기→화물기 개조시설 개발사업	1,364	2021. 9. 16.	2022. 4. 1.~ 2022. 8. 24.	0.28	0.25	-	예타 철회

주: 1. 예비타당성조사 의뢰 시 인천국제공사가 사업계획서상 산정한 총사업비로 최종 확정금액은 아님
 2. 인천국제공항건설 4단계 사업의 경우 대안별(총 3개 대안, 대안1의 경우: 2024년 활주로, 터미널 등 전체 시설 운영 개시 등)로 분석을 실시하였음
 자료: 인천공항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3]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경제성·재무성 분석 시 총사업비 산정 현황

(단위: 백만 원)

연번	사업명	구분	산정기관	총사업비 ¹⁾					계
				보상비	공사비	시설부대경비	예비비	기타 ²⁾	
1	오성공원사업	경제성	인천공항공사	-	73,486	5,894	-	-	79,380
			KDI	74,010	72,234	11,725	15,797	-	173,766
		재무성	인천공항공사	-	73,486	5,894	-	-	79,380
			KDI	74,040	63,932	11,232	14,917	-	164,121
2	인천국제공항건설 4단계 사업	경제성	인천공항공사	-	3,580,687	244,000	-	-	3,824,687
			KDI	332,996	3,536,545	252,902	412,244	6,666	4,541,353
		재무성	인천공항공사	-	3,560,686	244,000	-	-	3,804,686
			KDI	332,996	3,040,341	204,351	357,769	6,666	3,942,123
3	인천공항 IBC- II 복합리조트 기반시설 조성사업(1단계)	경제성	인천공항공사	-	1,595,804	102,839	95,426	17,763	1,811,832
			KDI	462,846	1,662,231	113,698	225,840	19,621	2,484,236
		재무성	인천공항공사	-	184,785	-	-	10,751	195,536
			KDI	462,846	136,542	-	60,922	9,827	670,137
4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주차타워 및 업무시설 신축사업	경제성	인천공항공사	-	304,229	17,288	32,152	-	353,669
			KDI	34,061	320,324	27,090	38,193	452	420,120
		재무성	인천공항공사	-	248,444	-	24,845	-	273,289
			KDI	- ³⁾	267,639	530	26,852	349	295,370
5	이스라엘 [타타] 여객기→화물기 개조시설 개발사업	경제성	인천공항공사	14,021	104,245	11,447	13,112	-	142,825
			KDI	49,953	117,674	11,977	17,960	-	197,564
		재무성	인천공항공사	14,021	104,245	11,447	13,112	-	142,825
			KDI	49,953	108,664	11,060	16,968	-	186,645

주: 1. KDI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관련 총사업비 중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 시설부대경비, 예비비 등은 낙찰률 적용 여부, 사업 특성 등에 따라 산정방법이 달라짐

2. 홍보비, 부지조성용역비 등

3.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주차타워 및 업무시설 신축사업'의 경우 당시 사업부지를 노상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보상비를 미반영하였음(기회비용 없음)

자료: 인천공항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원우회비 등 교육훈련생 사적비용 부담 지원 등

소 관 기 관 인천국제공항공사

조 치 기 관 인천국제공항공사

내 용

난방공사와 인천공항공사는 내규인 「교육훈련규정」 등에 따라 소속 임직원을 국내외 대학원 등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면서 위탁교육에 소요되는 입학금, 등록금 등의 비용을 교육훈련비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다.

(가) 난방공사의 경우

2009. 11. 3. 구 지식경제부(산업부)는 난방공사가 교육훈련비 지급가능 항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자치회비 등의 비용까지 교육훈련비 예산으로 지원한 데 대하여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¹⁾을 참조하여 교육훈련에 직접 소요되고 그 내역이 명확한 경우에만 교육훈련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급기준을 수립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난방공사는 2009. 12. 16. 당해 교육과정에 직접 소요되고 그 내역이 명확한 입학금, 등록금, 수업료, 기타 교육관련 보조비에 한하여 교육훈련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교육훈련규정」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난방공사 「교육훈련규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본인의 귀책사유로

1) 2016. 2. 3.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됨

교육이 중지되거나 교육성적이 불량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교육훈련비 등을 전액 상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임직원에게 교육훈련비를 지급할 때에는 입학금, 등록금 등 교육과정에 직접 소요되고 그 내역이 명확한 경비 외에 원우회비나 동문회비 등 사적모임을 위한 자치회비 또는 교육과정과 관련이 없는 학교발전기금 등(이하 “원우회비 등”이라 한다)을 예산으로 지급해서는 아니 되며²⁾, 교육훈련생이 교육성적 불량 등의 사유로 교육과정을 수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급한 교육훈련비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에 직접 소요되지 않는 원우회비 등 사적비용 지원

그런데 난방공사는 2020년도 [가]대학교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89기, 2020년 5~9월)에 참여한 BS(당시 부사장)에게 교육훈련비를 지급하면서 2020. 3. 10. 등록금(수강료) 15,000,000원을 [가]대학교 경영대학에 직접 지급하고도 같은 해 6. 22.과 6. 30. 위 과정 수강생들의 자치회비인 원우회비 12,000,000원과 조별회비 2,000,000원을 교육훈련비 예산으로 지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난방공사는 [별표 27] “난방공사 원우회비 등 부당 지급 명세”와 같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임직원 38명에게 교육훈련에 직접 소요되지 않아 교육훈련생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원우회비 등 계 78,126,000원을 교육훈련비 예산으로 지급³⁾하였다.

2)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3조의2에서 교육훈련비는 공무원의 훈련에 직접 쓰이고 그 명세가 명확한 입학금·등록금·부담금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의 “국내훈련 개요”를 보면 교육훈련비는 입학금, 수업료 등 위탁교육기관에 실제 납입한 금액을 지급하되, 학생회비나 식대 등 비공식비용은 교육훈련생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3) 난방공사가 교육훈련비 예산으로 원우회비를 지급한 교육과정 중 일부 교육과정의 원우회비 사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대학교 발전기금, 졸업여행, 워크숍·단합대회, 송년회비, 경조사비 등 주로 교육생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사적 모임을 운영하는 데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교육과정의 경우 교육과정이 종료된 이후에도 기존에 납부한 원우회비로 모임을 지속하고 있음

2) 교육과정 미수료자에 대해 교육비 미환수

난방공사는 2019년 [가]대학교 경영대학 CFO 전략과정(28기, 2019년 4~11월)에 참여한 BT에게 2019. 4. 2. 교육비 13,000,000원, 같은 해 5. 10. 원우회비(1차) 2,000,000원, 같은 해 11. 15. 원우회비(2차) 1,000,000원 등 계 16,000,000원⁴⁾을 교육훈련비 예산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BT는 [나]본부장으로서 업무가 많아 바쁘다는 사유로 총 20회의 수업과 1회의 사례발표 워크숍(2박 3일) 중 9회의 수업에 결석을 하여 출석일수 부족⁵⁾으로 교육과정을 수료하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난방공사는 BT에게 지급한 교육훈련비 등 16,000,000원을 2022. 12. 16. 감사일 현재까지 환수 조치하지 않고 있었다.⁶⁾

(나)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인천공항공사 「교육훈련 규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위탁교육 대상 임직원에게 위탁교육에 직접 소요되고 그 내역이 명확한 입학금, 등록금 및 교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인천공항공사는 2016~2022년간 [가]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 학과정에 참여한 일반 직원 3명 모두 본인이 원우회비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해 원우회비 등을 교육훈련비 예산으로 지원하지 않고 교육대상 직원이 직접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임직원에게 교육훈련비를 지급할 때에는 교육과정에 직접 소요되고 그 내역이 명확한 경비 외에 원우회비 등까지 예산으로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4) 1~2차 원우회비 계 3,000,000원은 “(가)항 1)”의 [별표 27] “난방공사 원우회비 등 부당 지급 명세”와 중복됨

5) 위 과정의 수료요건은 총수업일수의 70%(14일) 이상 출석과 연구과제 사례발표임

6) BT는 2023. 1. 20. 교육비 등 16,000,000원을 난방공사에 반납하였음

그런데 인천공항공사는 2020년도 **가**대학교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89기, 2020년 5~9월)에 참여한 BU(당시 사장, 2022. 4. 15. 퇴직)에게 교육훈련비를 지급 하면서 2020. 3. 19. 등록금(수강료) 15,000,000원을 **가**대학교 경영대학에 직접 지급하고도 같은 해 8. 12. 위 과정 수강생들의 자치회비인 원우회비 12,000,000 원을 교육훈련비 예산으로 지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인천공항공사는 [별표 28] “인천공항공사 원우회비 등 부당 지급 명세”와 같이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고위관리자(임원, 처장 등) 9명에게 교육훈련에 직접 소요되지 않아 교육훈련생 개인이 부담해야 할 원우회비 등 계 33,500,000원을 교육훈련비 예산으로 지급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① 난방공사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교육훈련규정」을 준수하여 교육비가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인천공항공사는 교육훈련비 중 위탁교육 과정의 이수 관련성·필요성이 교육기관으로부터 공식 확인되지 않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급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나)항” 인천공항공사의 경우와 관련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앞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교육훈련 규정」에 따라 교육과정에 직접 소요되고 그 내역이 명확한 경비가 아닌 원우회비 등을 예산으로

지금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훈련비 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27]

난방공사 원우회비 등 부당 지급 명세(2017년~2022년 8월)

(단위: 원)

연번	성명	당시 직급	교육과정명	지급일자	지급금액
1	-	-	개아대학교 에너지 CEO과정	2017. 5. 26.	1,000,000
2	-	-	개재대학교 노동대학원 최고지도자과정	2017. 3. 10.	3,000,000
3	-	-	개재대학교 노동대학원 최고지도자과정	2017. 3. 10.	3,000,000
4	-	-	개아대학교 CFO 전략과정	2017. 6. 21.	2,000,000
5	-	-	개아대학교 에너지 CEO과정	2018. 6. 14.	2,000,000
6	-	-	개카원 에너지 고위경영자과정	2018. 7. 27.	1,000,000
			개아대학교 국가정책과정	2021. 6. 17.	2,000,000
7	-	-	개카원 에너지 고위경영자과정	2018. 7. 27.	1,000,000
8	-	-	개재대학교 최고관리자과정	2018. 5. 18.	1,500,000
9	-	-	새카대학교 최고경영과정	2018. 6. 4.	1,000,000
10	-	-	개아대학교 CFO 전략과정	2018. 6. 14.	2,000,000
11	BS	-	개아대학교 국가정책과정	2018. 11. 26.	3,000,000
		부사장	개아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2020. 6. 22.	12,000,000
				2020. 6. 30.	2,000,000
12	-	-	개아대학교 에너지 CEO과정	2019. 4. 19.	2,000,000
13	-	-	개아대학교 국가정책과정	2019. 6. 14.	2,000,000
14	-	-	개재대학교 최고관리자과정	2019. 4. 22.	1,500,000
15	-	-	래탄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2019. 5. 21.	1,000,000
16	-	-	래사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2019. 3. 11.	1,000,000
				2019. 8. 26.	1,000,000
17	-	-	개재대학교 경영자과정	2019. 5. 21.	1,000,000

연번	성명	당시 직급	교육과정명	지급일자	지급금액
18	BT	-	[개]아대학교 CFO 전략과정	2019. 5. 10.	2,000,000
				2019. 11. 15.	1,000,000
19	-	-	[개]차대학교 기계공학과	2020. 2. 28.	8,000
20	-	-	[개]카대학교 최고관리자과정	2020. 3. 16.	1,359,000
				2020. 9. 17.	1,359,000
21	-	-	[개]아대학교 국가정책과정	2020. 6. 22.	2,000,000
22	-	-	[개]탐센터 CEO 정책과정	2020. 5. 25.	3,000,000
23	-	-	[개]바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2020. 9. 11.	1,000,000
24	-	-	[개]파원 노사관계 최고지도자과정	2020. 3. 31.	850,000
25	-	-	[개]파원 노사관계 최고지도자과정	2020. 3. 31.	850,000
26	-	-	[개]파원 노사관계 최고지도자과정	2020. 3. 31.	850,000
27	-	-	[개]파원 노사관계 최고지도자과정	2020. 3. 31.	850,000
28	-	-	[개]아대학교 CFO 전략과정	2020. 8. 20.	2,500,000
29	-	-	[개]탐센터 CEO 정책과정	2021. 5. 21.	2,200,000
30	-	-	[개]아대학교 CFO 전략과정	2021. 6. 3.	3,000,000
31	-	-	[개]파원 노사관계 최고지도자과정	2021. 4. 8.	850,000
32	-	-	[개]파원 노사관계 최고지도자과정	2021. 4. 8.	850,000
33	-	-	[개]파원 노사관계 최고지도자과정	2021. 4. 8.	850,000
34	-	-	[개]탐센터 CEO 정책과정	2022. 5. 2.	2,200,000
35	-	-	[개]자대학교 경영자 과정	2022. 6. 3.	2,000,000
36	-	-	[개]파원 노사관계 최고지도자과정	2022. 4. 7.	850,000
37	-	-	[개]파원 노사관계 최고지도자과정	2022. 4. 7.	850,000
38	-	-	[개]파원 노사관계 최고지도자과정	2022. 4. 7.	850,000
계					78,126,000

자료: 난방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8]

인천공항공사 원우회비 등 부당 지급 명세(2018년~2022년 8월)

(단위: 원)

연번	성명	당시 직위	교육과정명	지급일자	지급금액
1	-	-	개아대학교 국가정책과정	2018. 6. 8.	2,000,000
2	-	-	개아대학교 국가정책과정	2018. 11. 20.	3,000,000
3	-	-	개아대학교 CEO 정책과정	2019. 3. 5.	3,000,000
			개아대학교 국가정책과정	2019. 11. 8.	2,000,000
4	-	-	개아대학교 국가정책과정	2019. 5. 24.	2,000,000
5	-	-	개재대학교 최고위정책과정	2019. 10. 25.	1,500,000
6	-	-	개아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2020. 8. 12.	12,000,000
7	-	-	개재대학교 건설경영 최고위과정	2020. 12. 30.	3,000,000
8	-	-	개아대학교 국가정책과정	2021. 6. 11.	2,000,000
9	-	-	개재대학교 건설경영 최고위과정	2022. 6. 21.	3,000,000
계					33,500,000

자료: 인천공항공사 제출자료 재구성